

어선 총톤수 []측정 []재측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측정요청일자 + 5일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전화번호)				
측정(재측정) 어선 명세	어선번호				
	어선의 종류 [] 동력 [] 무동력		어선의 명칭 (원명:)		
	선적항		진수 연월일 년 월 일		
	주요 치수 (m)	길이: 깊이:	너비:	선체 재질 []강 []목 []강화플라스틱(FRP) []그 밖의 재질()	
	선적항		조선자		
측정(재측정)을 받으려는 일자		년 월 일			
측정(재측정)을 받으려는 장소					
신청 사유					

「어선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이
한
도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

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
대 한 민 국 영 사

첨부서류	1. 도면(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합니다) 가. 일반배치도 나. 선체선도 다. 중앙횡단면도 라.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. 상부구조도 바. 삭제 사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. 조서지·조서자·진수일 및 선박의 위명을 증명하는 서류(필요시에 한정합니다)	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
------	---	---

유의사항

○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 시기

- 어선의 건조·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한 때
-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
- 외국적 어선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어선으로 등록하려 하는 때
-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
처리절차

